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103호(《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해관총서의 공고)

지난 4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공지에 이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 업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을 공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이 지침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에 있어 등록 신청 진행 절차, 신청 방식, 서류 심사기준, 비용과 문의/감독 전화번호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중 제12조 중의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평가심사'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설명, 제19조 중 '생산 장소 이전'과 '법정 대표인 변경'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변경'과 '신규 신청'의 상황 구분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울러 등록 및 등록 변경, 연장, 말소 등 업무 신청 시의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하였음.

2021년 4월 21일에 공지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이하“등록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 이하 “관리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 할 예정.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및 기업 정보 조회

(1) 등록시스템 로그인 및 해외생산업체 정보 조회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 웹 주소: <https://cifer.singlewindow.cn/>, 또는 중국국세무역단일창구(<https://www.singlewindow.cn/>)

포털사이트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음.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시스템에서 그 중국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2)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신청방식과 신청서류에 있어 해외 유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외,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식품유형 해외생산업체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배분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제출해야 함. 해외 주관 당국의 등록시스템 계정은 해관총서에서 배분.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유형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신청하고 등록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

2.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련 제품 유형 및 상품 코드 조회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관련 제품의 유형과 해당 상품 코드(HS코드), 검사검역명칭(CIQ코드)은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고 조회방식은: **메인 페이지 메뉴(首页菜单) - 제품 유형 조회(产品类别查询)**.

3.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 및 별첨 문서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업무 지침(办事指南) 칼럼 - 행정심사(行政审批)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办事指南》)”을 참조할 수 있음.

4.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수입 신고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항(启运)하는 대중국 수출 식품은 수입 신고 시 통관단(报关单)의 “제품 인허가(产品资质)”항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증서 칼럼(허가증 유형 코드 519)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기입해야 함. 2020년 버전 신고 사항을 실시하는 해관에 수입식품 신고 시, “기타 기업(其他企业)”항 중 “기타 기업 유형(其他企业类别)” 칼럼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을 선택하고 “번호 또는 기업명(编号或企业名称)” 칼럼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함.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입,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에

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5. 등록번호 표시 및 포장 라벨 표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은 그의 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관리방법” 중 포장과 라벨, 표시의 요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 요구는 기존 규정의 요구를 적용.

6. 등록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자격은 계속 유효. 이미 등록된 기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6개월 기간, “등록규정”제20조 관련 요구에 따라 등록 연장 업무를 진행해야 함. 해관총서는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말소 조치를 함.

7. 비용에 관하여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실시에 있어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음.

이와 같이 공고함.

해관총서

2021년 12월 13일

자료원 : 해관총서(2021. 12. 14.)

출처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53483/index.html>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없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1.11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1월	2202990099	알로에음료	1296	칭다오	1. 식품첨가제 홍화황 사용범위 초과 2. 식품첨가제 치자청 사용범위 초과	반송 또는 소각
	1605610090	염장해삼	2099	칭다오	화물과 서류 불일치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2021. 12. 20.)

출처: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wzrjdspxx57/4071885/index.html>